

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5. 12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상수도요금체계 개선추진지침에 의거 수도급수사용료와 함께 고지되는 관계로 상수도요금체계와 동일체계로 개선하여 혼란을 최소화 하고 또한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하수도사용 요금표의 업종을 통·폐합하고 단계 및 요금을 효율적으로 조정 개선하여 요금기준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
- '01년 이후 하수도사용료 동결로 인한 원리금 상환재원과 하수도 사업 신규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하수도요금기준중 업종을 종전 6개업종에서 4개업종으로, 적용단계와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함.
 - 업무용, 영업용, 옥탕1종을 일반용으로 통합조정
 - 단계를 가정용은 6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고 일반용은 5단계로 통합 조정
- 하수도 사용 업종 조정에 따른 업종구분표 조정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130조
- 하수도법 제21조

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” 를 “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” 로 한다.

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.

제1조중 “하수도법” 을 “「하수도법」” 으로 하고, 제4조제1항중 “건설산업기본법” 을 “「건설산업기본법」” 으로 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” 을 “「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」” 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중 “구미시수도급수조례” 를 “「구미시 수도급수 조례」” 로 하며, 제11조제2항제1호중 “지하수법” 을 “「지하수법」” 으로 하며,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4항 단서규정중 “수질환경보전법” 을 “「수질환경보전법」” 으로 하고, 제13조제5항중 “구미시수도급수조례” 를 “「구미시 수도급수 조례」” 로 한다.

제15조제2항제1호가목중 “하수도법” 을 “「하수도법」” 으로, 동조동항동호나목 및 다목중 “수질환경보전법” 을 “「수질환경보전법」” 으로 하며, 동조동항제2호나목1)세목중 “도시계획법” 을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” 로, “주택건설촉진법” 을 “「주택법」” 으로, “도시재개발법” 을 “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” 으로, “택지개발촉진법” 을 “「택지개발촉진법」” 으로, “토지구획정리사업법” 을 “「도시개발법」” 으로, “도시공원법” 을 “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” 으로 하며, 동조제3항제1호중 “오수·분뇨및

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”을 “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21조중 “지방세법”을 “「지방세법」”으로 하며, 제28조제2항중 “구미시수도급수조례”를 “「구미시 수도급수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(개정 2001. 1. 17)

하수도 사용 요금표(조례 제10조 제2항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 업종별	단 계 별	요 금	비 고
가정용	0 ~ 20 m ³ (1단계)	120	
	21 ~ 30 m ³ (2단계)	160	
	31 m ³ 이상 (3단계)	240	
일반용	0 ~ 100m ³ (1단계)	220	
	101 ~ 300m ³ (2단계)	270	
	301 ~ 1,000m ³ (3단계)	330	
	1,001 ~ 2,000m ³ (4단계)	400	
	2,001m ³ 이상 (5단계)	470	
옥탕용	0 ~ 1,000 m ³ (1단계)	570	
	1,001 ~ 1,500 m ³ (2단계)	670	
	1,501 ~ 2,000 m ³ (3단계)	780	
	2,001 m ³ 이상 (4단계)	900	
산업용	m ³ 당	230	

[별표 2] (개정 1998. 10. 21)

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 (조례 제10조 제3항 관련)

업 종	내 용
가 정 용	· 전용 또는 공업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· 담배, 연탄, 양곡, 문방구, 지물포,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, 인장업, 행정서사업, 수예점, 만화가게, 구멍가게 등으로서 10㎡ 미만의 소규모 가게 ·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 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· 사설소화전
일 반 용	· 타 업종에 속하지 않은 모든 급수
욕 탕 용	· 목욕장업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필한 목욕장) 단, 바닥면적(탈의실, 욕실, 욕조포함)이 100㎡이하의 목욕장은 일반용 · 「의료법」 및 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한 시설규모(연면적 830㎡, 욕실 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㎡) 이상이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
산 업 용	·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· 두채 재배업소

주) 1.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,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 한다.

2. 영업용중 한국표준산업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.

3.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 한다.

신 · 구 문 대 비 표

현 행				개 정			
<제명 뛰어쓰기>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				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			
[별표1] 하수도 사용 요율표 (단위:원)				[별표1] 하수도 사용 요율표 (단위:원)			
구분 업종별	단 계 별	요금	비고	구분 업종별	단 계 별	요 금	비고
가정용	0 ~ 10m ³ (1단계)	110		가정용	0 ~ 20m ³ (1단계)	120	
	11 ~ 20m ³ (2단계)	130			21 ~ 30m ³ (2단계)	160	
	21 ~ 30m ³ (3단계)	150			31m ³ 이상 (3단계)	240	
	31 ~ 40m ³ (4단계)	170					
	41 ~ 50m ³ (5단계)	220					
	51m ³ 이상 (6단계)	250					
업무용	0 ~ 20m ³ (1단계)	130		일반용	0 ~ 100m ³ (1단계)	220	
	21 ~ 50m ³ (2단계)	160			101 ~ 300m ³ (2단계)	270	
	51 ~ 100m ³ (3단계)	230			301 ~ 1,000m ³ (3단계)	330	
	101 ~ 300m ³ (4단계)	250			1,001 ~ 2,000m ³ (4단계)	400	
	301m ³ 이상 (5단계)	300			2,001m ³ 이상 (5단계)	470	
영업용	0 ~ 30m ³ (1단계)	170					
	31 ~ 50m ³ (2단계)	200					
	51 ~ 100m ³ (3단계)	280					
	101 ~ 500m ³ (4단계)	410					
	501m ³ 이상 (5단계)	500					
욕탕용 1종	0 ~ 200m ³ (1단계)	120		욕탕용	0 ~ 1,000m ³ (1단계)	570	
	201 ~ 300m ³ (2단계)	160			1,001 ~ 1,500m ³ (2단계)	670	
	301 ~ 500m ³ (3단계)	200			1,501 ~ 2,000m ³ (3단계)	780	
	501m ³ 이상 (4단계)	240			2,001m ³ 이상 (4단계)	900	
욕탕용 2종	0 ~ 200m ³ (1단계)	400					
	201 ~ 300m ³ (2단계)	510					
	301 ~ 500m ³ (3단계)	580					
	501m ³ 이상 (4단계)	640					
산업용	m ³ 당	230		산업용	m ³ 당	230	

현행		개정	
[별표2]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		[별표2]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	
업종	내용	업종	내용
가정용	·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에 급수 하는 것. · 담배·연탄·양곡·문방구·지물·철물의 소매점 등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· 신문보급소,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·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· 사설소화전	가정용	·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· 담배, 연탄, 양곡, 문방구, 지물,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, 인장업, 행정서사업, 수예점, 만화가게, 구멍가게 등으로서 10㎡ 미만의 소규모 가게 ·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· 사설소화전
업무용	· 시립위탁시설(청소년회관, 체육시설에 한함) · 사회구호단체, 원호단체, 사회복지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,허가를 받아 직영하는 사업 포함 · 학교(유치원, 유아원 포함) · 정당, 병영 · 새마을금고, 농협, 축협, 수협, 산림조합, 한국은행, 정부투자기관, 전용전에 의한 철도용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, 비영리수영장 · 교회, 사찰, 국.공립대학부속병원(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포함) · 신문사, 방송국 ·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· 급수전에 의한 급수(단,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)공설소, 화전 · 시장이 지정한 무료 공중이용 화장실에 대한 급수 ·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	일반용	· 타 업종에 속하지 않은 모든 급수
영업용	· 식품접객업, 공연장, 숙박업 ·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시설규모(연면적830㎡. 욕실 발한실이 바닥면적 합계90㎡)이하의 안마시술소 · 유기장, 오락장, 노래방 · 백화점, 도매센터, 대규모소매점, 대형점, 시장(상가포함)		

현행		개정	
업종	내용	업종	내용
영업용	· 차량판매, 정비업(검사장 포함), 주차장, 세차장, 주유소(석유판매소 제외) 운송 또는 관광업(창고보관업 포함) · 음식점 · 학원(도서실 포함,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) · 사진현상소, 체육시설업(탁구장업, 체육도장업,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) · 금융기관(보험, 증권회사, 신용금고 등 포함, 전당포 제외) · 발전소 · 이발소(미장원 포함) · 병원 · 화훼, 식목업 · 인쇄소, 출판사(인쇄기계 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) · 빌딩(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하는 4층 이상 건물), 오피스텔 · 도살장, 정육업 · 양조업, 제빵업, 제분업(방앗간 포함), 제당업, 청량음료제조업, 의약품, 화장품, 화장품제조업, 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, 합성수지제조업, 페인트류제조업, 가구류제조업(자제가공 포함), 연료제조 (고압가스 제조 포함) ·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, 식료품제조가공업, 피혁제조 가공업, 기타 월평균 200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 · 도금업소 (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) · 제재소, 목재소(목공소 제외) · 요업(시멘트 가공제품, 초자제품 포함) ·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 시설에 대한 급수(단, 운반 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 효율적용,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) ·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(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에 멸실 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) ·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(단, 최종단계 효율 적용) ·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	일반용	
욕탕용 1종	· 공동탕에 대한 급수 (일반 목욕장업 · 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)		

현행		개정	
업종	내용	업종	내용
욕탕용 2종	· 특수목욕장업(허가업소의 업태 구분은 허가 기준) ·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· 가족탕업, 한증막업(허가기준은 업태 구분은 허가기준) ·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시설규모(연면적 830㎡, 욕실 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㎡) 이상이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	욕탕용	· 목욕장업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필한 목욕장) 단, 바닥면적(탈의실, 욕실, 욕조포함)이 100㎡이하의 목욕장은 일반용 · 「의료법」 및 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한 시설규모(연면적 830㎡, 욕실 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㎡) 이상이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
산업용	·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· 두채 재배업소	산업용	· 현행과 같음
주) 1.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,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. 2. 영업용중 한국표준산업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. 3.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.		주) 현행과 같음	